

□ 변경 대비표

신한브라질증권투자신탁(H)[주식]

변경시행일: 2023년 04월 27일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1 환매수수료 삭제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환매수수료 삭제: 제3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제3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①~⑦ <생략> ⑧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 2(수익증권의 전환) ①~⑦ <현행과 같음> <삭제>
1. 환매수수료 삭제: 제39조(환매수수료)	제39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4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2. 종류 A1, 종류 A-e, 종류 S : 30일미만 이익금의 10% 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39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환매수수료 삭제: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생략>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41조(신탁계약의 변경)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1. 환매수수료 삭제: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② <생략>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⑤ <생략>	제43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변경
-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4 환매수수료 삭제
- 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 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Gilberto Nagai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Marcos Kawakami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32.23% , 1등급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실제 수익률 변동성: 36.66% , 1등급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3년03월31일)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식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식: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의 목적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 대차거래 위험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3부 1. 재무정보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식 신설>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식: - 증권대차 거래에 따른 수수료수의 또는 비용 - 주식의 매매회전율 등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4. 환매수수료 삭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나. 펀드 내 전환(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3) 수익증권 전환시 환매수수료 1. 수익증권의 자동 전환을 위해 환매 되는 경우 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환매수수료 면제 2. 수익증권의 전환 후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90일 미만 환매시 환매수수료 부과되는 종류형 기준) 2-1.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없는 경우 : 환매수수료 면제 *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90일 미만 투자' 이므로, 23.06.07에 추가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23.08.07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환매수수료 부과 대상이지만 환매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2. 전환 후 추가 납입분이 있는 경우 : 전환 후 추가 납입 분에 대해서만 기존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적용 * 23.09.05 환매시, 전환전 시점에 설정된 매입분(22.07.07 최초매입분 및 23.06.07 추가매입분)을 초과하여 환매하는 경우, 전환 후 매입분(23.08.07 및 23.08.14)에 대하여서만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매수수료 부과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나. 펀드 내 전환(보수인하 종류 수익증권 간의 전환) <삭제>

<p>4. 환매수수료 삭제: 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다.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별로 다음과 같이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된 수수료는 환매 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2. 종류 A1, 종류 A-e, 종류 S :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제2부 11. 매입, 환매 및 전환 기준 다. 환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p>4. 환매수수료 삭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종류 A1, 종류 A-e, 종류 S :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없음</p>
<p>5. 운용전문인력의 운용 규모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3월31일)</p>
<p>6.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단위: 백만원) 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최근현황갱신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단위: 백만원) -최근현황갱신(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3월31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변경
- 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3 환매수수료 삭제
-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정정전	정정후
<p>1.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변경: [요약 정보] 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Gilberto Nagai</p>	<p>운용전문인력 [외국위탁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한브라질증권모투자신탁[주식] - Marcos Kawakami</p>
<p>2.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요약 정보]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p>	<p>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p>	<p>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최근현황갱신</p>
<p>3. 환매수수료 삭제: [요약 정보] 환매수수료</p>	<p>1.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C-i, 종류 C-w :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2. 종류 A1, 종류 A-e, 종류 S :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없음</p>
<p>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 규모 업데이트: [요약 정보] 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p>	<p>운용전문인력 -최근현황갱신(기준일: 2023년03월31일)</p>